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강 호 경* · 임 목 삼**

-
- I. 서 론
 - II. 신용장 관련 서류심사기준과 이론
 - III.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과 상당일치론
 - IV. 결 론
-

I. 서 론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시·공간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3자¹⁾에게 이전하거나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안정된 거래가 보장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의 대부분은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배화여자대학 국제무역과 겸임교수

1) 여기서 “제3자”는 국제운송인(이른바, 국제운송회사)과 국제무역결제인(이른바, 외국환 은행)을 의미하고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정보제공처들로부터 한정된 정보를 입수하여 문서상 효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게 되는 서류를 의미한다.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²⁾

이러한 국제무역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만들어진 신용장은 국제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출상과 수입상은 체결한 계약과 일치되는 물품과 함께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상은 인도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계약과 일치한 물품이 선적되었음을 확인한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³⁾을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상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대금을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물품인도와 대금회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오고 있다.⁴⁾

신용장거래에서 통지은행(the advising bank)은 발행은행(the issuing bank)의 전문대리인(special agent)⁵⁾이고 발행은행⁶⁾은 수입상(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전문대리인이다.⁷⁾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위임(委任)된 대리권 계약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였을 때 대리관계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관계된 제3자와 대리계약 당사자에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권한관계와 책임소재를 구분하여야 하는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행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신청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을 준

- 2) 즉,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국제무역정의가 “서류의 거래”이다.(양영환·오원석, 『최신 무역상무론』, 법문사, 2005, pp. 5~6)
- 3) 권리증권이라 함은 선하증권이나 계약이행을 확인한 선적서류들 이른바, 상업송장·원산지 증명서·포장명세서·보험증권 등을 말한다.
- 4)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대신하여 발행은행이 직접 또는 수출상 국가의 은행을 통하여 물품의 권리증권, 선급자금 또는 상환약속 등의 묵시담보가 있으면 은행이 받는 담보를 대가로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Richard King, *Gutteridge and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8th ed., Europa pub., 2001, p. 1)
- 5) ‘Agent’의 유형은 그들이 소유한 권한의 정도에 따라 포괄대리인(Universal Agent), 전문대리인(Special Agent), 일반대리인(General Agent)의 형태로 나타난다.(Nicholas Kouladis, *Principle of Law Relating to Overseas Trade*, Blackwell, 1998, p.83.)
- 6) ‘the issuing bank’와 ‘the applicant’는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에서는 ‘발행은행’과 ‘발행신청인’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시환 교수님(경원대)이 제기한 용어정의에 관한 논문을 인용하여 ‘발행은행’과 ‘발행신청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이시환, “대한상공회의소 발간 ‘UCP 600 공식 번역 및 해설서’상의 문제점과 그 보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8권, 2008, pp. 71~91. 참조)
- 7) L. D'Arcy, C. Murray and B. Cleave,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0, p. 172.

수하여 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 거래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거나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은행은 단지 서류로 거래할 뿐이므로(UCP 600 제5조), 은행은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를 심사하여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UCP 제14조 a항).

무역계약에서 신용장으로 대금결제를 약정한 이후에는 수출상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물품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시에 대하여 정히 지급하여야 하고,⁸⁾ 은행은 제시된 서류 이외의 기초적인 거래나 무역업계의 상관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⁹⁾ 그러나 현실적인 은행의 업무행태를 보면, 미국의 Ronald Mann교수가 연구한 사례에서 대상 500건의 신용장 중 엄격일치(strict compliance)에 따른 서류심사를 한 결과 73%에서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가 발견되었으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경우가 발행신청인의 양해에 따라 발행은행이 모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지급거절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¹⁰⁾

선학의 연구를 보면, 신용장 서류심사의 규정은 엄격일치하게 선적서류를 심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관행과 환경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엄격일치의 완화가 시대적인 요구라는 의견으로 양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발행신청인이 발행은행에게 위임한 권한인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서류가 제시되면 결제 또는 매입¹¹⁾하도록 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서

8) "The bank must pay even though the applicant alleges fraud, if, in fact, there is no fraud"(Unifirst Fed. Sav. Bank v. American Ins. Co., 905 F.2d 208 (8th Cir. 1990).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2007, p. 91.)

9) "The bank has no duty to notify the applicant before paying the beneficiary that presents conforming documents, notwithstanding facts that the underlying transaction required the beneficiary to notify the applicant of its draw." (Five Star Parking v. Philadelphia Parking Auth., 703 F. Sup. 20 (ED Pa. 1989)); 서정두, 상계논문, p. 92.

10) John F. Dolan이 Documentary Credit Insight에 "Why Are So Many Documents Discrepant?"라는 제목으로 2002. 5. 20. 기고한 원고(채동현,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 「저스투스」 7호, 2002, p. 330)

류심사규정과 현실적 혹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신용장 서류의 심사관행인 상당일치론(theory of substantial compliance)¹²⁾을 UCP 600 및 ISBP¹³⁾를 중심으로 UCC¹⁴⁾, ICC 은행위원회 유권해석과 본 주제관련 국내외 법원의 판례 그리고 국내외 선학(先學)의 문헌(文獻)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 신용장을 심사할 때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모색하여 보다 합리적인 신용장 거래관행을 진작시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Ⅱ. 신용장 관련 서류심사기준과 이론

1. 신용장의 독립성과 엄격일치론

(1)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이 은행에서 발행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의 위치에 있어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전혀 구속받지 않고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신용장의 독립성(the independency of the credit)과 신용장 거래는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지 기타 물품 등의 원인관계에

11) UCP 600 제2조 결제(honour)는 지급신용장의 경우 일람출급 지급,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기에 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2) 'strict compliance', 'substantial compliance'는 신용장 관련 선적서류의 심사와 관련한 해석기준으로서 기존의 문헌을 보면 이를 'the doctrine' 또는 'the rule'로 표현하여 우리말로 '원칙' 혹은 '규칙'으로 해석하고 있다.(D'Arcy, Murray and Cleave, op. cit., p.172 ;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 of Credit*(rev. ed. 2003) and 2005 *Suppliment No. 1*, A.S. Pratt & Sons, 2005, 4-75 ; 강원진,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2005, p. 144 ;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 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제11권, 1998, p. 346)(※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자 "엄격일치론" 혹은 "상당일치론"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13)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ISBP)*, ICC Publication No. 681, 2007(이하, 'ISBP')

14) 1995년 개정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5편 신용장(이하, 'UCC')

있는 거래와 무관하다는 신용장의 추상성(the abstraction of the credit)은 신용장을 통한 거래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신용장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주는 기초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신용장조건으로 체결하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에게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였음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려주게 된다. 즉 발행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은행의 고객인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신용장 내용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뿐이지 매매계약의 내용을 인지할 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신용장의 독립성에 대하여 UCP 600은 제4조 a항에서 “신용장은 그 본질상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간에 또는 발행신청인과 발행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은행들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신용장거래가 매매계약이나 다른 계약을 근거로 성립되지만, 신용장 거래 자체는 그 계약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장에 의한 은행의 확약은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과 독립된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참조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수익자 입장에서 은행상호간에 존재하는 계약이나 발행신청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개설에 관한 계약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은 매매계약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UCC 제5-108조 제f항에서도 “발행인은 근거계약, 거래약정 또는 거래의 이행 또는 불이행,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 특정업종 관행의 준수나 지식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¹⁵⁾고 하여,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15) UCC §5-108. ISSUER'S RIGHTS AND OBLIGATIONS. (F) An issuer is not responsible for: (1) the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arrangement, or transaction, (2) an act or omission of others, or (3) observance or knowledge of the usage of a particular trade other than the standard practice referred to in subsection(e).

물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그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이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된다는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에 의하여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계약물품의 거래대금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에만 관련하고 만약 동 환어음이 제출될 때 소정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면 은행은 기본매매계약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시한 바 있고¹⁶⁾, 영국의 법원도 “신용장 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고 물품 기타로 거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¹⁷⁾, 우리나라 대법원도 “발행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써 수익자를 위하여 발행은행을 상대로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¹⁸⁾하여 이 원칙을 역시 인정하고 있다.

신용장의 독립성은 무역거래 당사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은행을 매매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되도록 하여 신용장거래를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 절연시켜 독립·추상적으로 위치하도록 하여 나아가 어음의 불요인성(不要因性)을 보장하여 그 유통성을 높이는 법리와 일맥상통하게 된다.¹⁹⁾

(2) 신용장 서류심사의 엄격일치론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 상 엄격

16) *Maurice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 239 N.Y. 386, 146 N.E. 636, 639(1925).
(※ 본 원칙은 개정 미국통일상법전 이전의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신용장 제108조 a항에 의거한 것이다.)

17) *Astro Exito Nevagacion S.A. v. Chase Manhattan Bank N.A.,(C.A.)*(1988) 2 Lloyd's Rep. 217, affg.(1986) 1 Lloyd's Rep. 455, 462(“...Since the parties to documentary credits deal only in documents, the banks were in my judgment entitled to insist upon, and the defendants were obliged to provide, a reasonable documentary proof...”)

1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19) 小峯登, 「1974年信用狀統一規則(上)(逐條解説とその問題點)」, 外國為替貿易研究會, 1980, pp.95~96.

하게 일치하였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는 제시된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신용장의 기본원칙인 서류에 의한 거래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시된 서류를 주의깊게 검토할 의무도 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며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절하여야 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신용장 서류심사의 엄격일치론(theory of strict compliance)이라고 한다.

엄격일치론은 신용장 거래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은행의 서류심사가 신용장 서류와의 일치여부로 제한함으로써 전적으로 은행의 보호를 위한 것임과 아울러 신용장 발행신청인(매수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 서류상 합치의 엄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고, 이는 서류의 합치여부 판단에 은행의 자의적 해석 등이 허용된다면 발행신청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UCP 600 제14조에서는 “a. 지정을 받고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및 발행은행은 서류들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근거로 심사하여야 한다.”, “d. 서류 그 자체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문맥을 읽는 신용장의 데이터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지만, 그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엄격한 서류의 일치를 규정하고 있고, UCC 제5-109조 제b항에서도 “발행인(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를 가지고 서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서류의 문면상 정규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서류의 진정성립여부, 위조조사여부, 효력 등에 관하여 어떤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심사할 때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지를 어느

20) 박재윤, “신용장과 서류와의 합치여부”, 「민사판례연구」 8권, 1986, p.273 ; 채동현,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하에서 운송서류에 대한 심사”, 「국제거래법연구」, 2008, p. 124.

정도 엄격하게 점검하여야 하는가는 “...마치 별들의 전쟁에 있어서 로버트와 같은 역할...”²¹⁾이라는 표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거의 같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용인될 여지가 없다.”²²⁾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판례에 근거하여 정립되어 있다.

신용장 서류의 엄격일치에 따른 심사기준은 우선적으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에 의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발행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용장 발행약정에 의하여 발행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사기나 계약불이행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제시된 서류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일치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지급된 대금을 발행신청인에게 정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엄격일치론은 발행의뢰인에게는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보장하고, 은행에게는 제시된 서류의 문면상 일치만을 확인할 뿐 불일치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없게 해주며, 서류이외의 다른 관계나 기본거래의 이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하여 발행신청인과 은행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²³⁾

2. 국제표준은행관습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 제정본은 제10조에서 “은행은 반드시 모든 서류와 문서가 문면상 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주의를 다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류심사기준을 선언하였다.²⁴⁾

21) Joseph D. Becker,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The Irania Cases: Will the independence of credit survive?”, 13 UCCLJ, 1981, p. 337.

22) D'Arcy, Murray and Cleave, op., cit., p. 172. (“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

23) Xing Gao, *The Fraud Rules in the Law of Letter of Credi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 27.

24) Morris S. Rosenthal, *Techniques of International Trade*, McGraw-Hill Book Co., Inc., 1950, p. 520

그 이후 4차례에 걸친 개정 작업을 통하여 “상당한 주의”(with 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제출된 서류 “문면상”의 상호간 모순점을 심사하도록 하여 오다가 제5차 개정 UCP에서는 “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표준관습”이라는 개념을 추가 하였다.²⁵⁾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의 일치성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UCP 500 제 13조 제a항에서는 “규정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제조조건과 일치성은 본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UCC에서도 제5-108조 제a항 및 제c항에서 “신용장을 정규적으로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표준관습”에 따라 이를 규정하여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표준관습의 준수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²⁶⁾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심사 기준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이나 ‘표준관행’은 2002년 제정 ISBP가 성안되기 전 까지 UCP의 본문조항을 해설한 ICC 각종 공표물, ICC 은행위원회의 결정과 의견 및 이를 분석한 사례집, ICC와 제휴한 주요 금융기관의 결정과 의견 및 공표물, ICC의 요청에 의한 신용장분쟁 전문가그룹의 의견과 신용장법의 저명한 논문자료, 법원의 판례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²⁷⁾

2002년 제정된 ISBP는 UCP의 부칙이나 해석서 또는 개정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UCP 상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명문화하는데 기본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UCP 개정작업과는 상관없이 국제적인 표준은행관습을 정리한 결과물이다.²⁸⁾ 즉, ISBP는 ICC 은행위원회의 해석 등을 기초로 실질조사를 가미하여 작성된 ICC의 공식의견이지 UCP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되며 더욱 깊이 설명하는 것이다.

ISBP는 UCP와 같이 규칙이 아니라 UCP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ISBP는 규칙이 아니며 UCP를 변경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25) 양영환·서정두, 『국제무역법규』, 삼영사, 2003, pp. 364 ~ 369.

26) 동 조 제e항에서 “발행인은 신용장을 정규적으로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표준관습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표준관습에 대한 준수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맡길 문제이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표준관습의 증거를 제시할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27) James E. Byrne, *UCP 500 Explored: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Standard Banking Practice*, 7 Letter of Credit Update 6 (1991), p. 12.(서정두, 전계논문, 『무역상무연구』 제33권, p. 102)

28) 양영환 외2인,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5, p. 3.

ISBP의 서문에서는 “비록 ISBP는 UCP를 변경하지 않을지라도, ISBP는 명확히 상세하게 UCP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ISBP는 UCP에 발표된 일반원칙과 화환신용장 실무가의 일상의 작업간 요구되는 공백을 메운다.”²⁹⁾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심사의 기준은 UCP를 참조하는 것이 적절하고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는 ISBP의 관련 항목을 참조하는 적절하다는 ICC 은행위원회의 질의답변³⁰⁾을 보건데 ISBP는 독자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UCP 관련 의견과 사례를 정리한 지침서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3. 국제표준은행관습과 상당일치론

(1) 엄격일치론의 한계와 국제표준은행관습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체결된 신용장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서류를 제시하였더라도 경미한 서류 불일치가 발견되었다거나, 발행신청인의 시장상황이 악화되어 발행은행이 인수한 서류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싶은 차에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어 UCP의 서류심사 기준인 엄격일치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는 신용장 거래의 사용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용장 거래의 확산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신용장 거래는 무역거래 당사자의 결제를 보다 안정되고 원활히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신용장 거래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문제로 생각된다.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근거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UCP의 서류심사기준은 그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정도란 엄격일치의 기준이 완전한 수준(거울을 보는 듯한³¹⁾)인지 경미한 불일치 혹은 실수는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29) T. O. Lee, "The UCP 500 Transport Articles need to be revised", *DCINSIGHT*, Vol.9, No.4, 2003. 10/12, p.5.(박석재,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6, P. 335)

30) Anonymous, "Opinions from the Moscow Banking Commission meeting", *DCINSIGHT*, Vol.11, No.1, 2005. 1/3, p.10.(박석재, 상계논문, p. 336)

엄격일치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시된 서류를 심사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심사자의 전문성),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³²⁾ 더군다나 UCP는 서류심사의 일치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신용장 거래의 서류거래특성과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 특수성에 맞는 역할에 대한 한계에 근거하여 은행의 입장을 현실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발행신청인과 수익자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UCP는 UCP 500부터 제13조 제a항 “규정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제조건과 일치성은 본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2) 상당일치론

신용장법 교수인 Dolan은 엄격일치는 가혹한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신용장법의 산물로 고객과 발행은행간의 계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상업적 수단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에 의존하여야 한다³³⁾고 언급하여 엄격일치에 대한 해석을 공공성에 기초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공공성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의 Ronald Mann교수가 조사한 바와 같이 대상 500건의 신용장 중 엄격일치에 따른 서류심사를 한 결과 73%에서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가 발견되었지만 조사대상 대부분의 경우가 발행신청인의 양해에 따라 발행은행이 모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지급거절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경우

31) 이른바, 'mirror of image'

32) 이에 대하여 “은행원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형식상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 검토과정에서 기본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은 물론 기본거래 당사자에게 문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의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실무관행이다.”라는 의견도 있다.(이대진,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상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p.44.)

33) John F. Dolan, “Letter of Credit Dispute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 The issuer's and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 *Banking Law Journal* Vol. 150, No. 5., 1988, p. 297. ; *New Braunfels Nat. Bank v. Odiome*, 780. SW 2d 313(tex. Ct. App. 1989)(강원진, 전제논문 p. 144)

로 생각된다. 즉, 현실적인 은행의 업무관행에 의하면 서류불일치를 엄격하게 심사하지도 않고 신용장 거래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묵인 하에 하자서류가 용인된다는 것이다.

상당일치론은 서류심사 시에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지급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서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으로 엄격한 일치여부를 묻자 그대로 인용한다면 거울을 보는듯한 엄격한 심사를 연상할 수도 있으므로 엄격일치의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서류일치여부를 판단한 미국의 판례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신용장 서류의 일치심사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엄격일치의 기준과 상당일치의 기준 그리고 엄격일치를 원칙으로 한 상당일치 기준의 일부도입 등으로 분류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이와 같은 기준의 구분은 엄격일치의 기준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주 법원이 일반적이어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⁴⁾

상당일치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결한 미국의 법원들은 형식이 본질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들어 다양한 신용장 조건으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디애나주 항소법원은 “증권상 신용장의 본질적 조건이 모두 일치할 경우 그 환어음의 완전성은 기술적이거나 또는 경미한 사유에 의하여 도전받아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판시³⁵⁾한 바 있고, 오클라호마 주법원은 “궁극적인 해석의 원칙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합의의 본질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판시³⁶⁾하여 상당일치의 기준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메릴랜드 주법원은 “우리가 엄격일치 기준의 과도한 적용이나 또는 지나친 기술적 적용으로 인한 오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 이 원칙을 적용하는 판례들은, 예를 들어 발행은행이 명백하고 사소한 오식(誤植)을 발견했을 경우

34) Hotchkiss Carolyn,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3, 1991, p. 292.

35) *Peoples State Bank of Clay County v. Gulf Oil Corp.*, 446 N.E. 2d 1358 (Ind.App.Ct. 1983)

36) *Bank of Montreal v. Federal Nat'l Bank & Trust Co. of Shawnee*, 622 F. Supp. 6(W.D.Okla. 1984)

지급거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만큼 엄격하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이 매수인으로부터 은행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한 불일치 사항을 이용하는 것을 법원은 용인치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³⁷⁾한 바 있고,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서류가 지급은행을 오도(誤導)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된 서류와 제시된 서류 사이의 불일치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판시³⁸⁾를 통하여 사소한 오타를 서류 불일치로 보지 않는 엄격일치를 원칙으로 한 상당일치 기준의 일부도입 판결도 내린 바 있다.

Ⅲ.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과 상당일치론

1.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과 엄격일치론

UCP 600은 제14조에서 서류의 공통된 심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4조는 기존 UCP 500의 제13조, 제14조 제b항,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a항 제c항, 제43조 제a항의 내용을 서류심사의 기준규정 아래 정리하고 있다.³⁹⁾

UCP 600 제14조 제a항에서 “은행은 서류들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근거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문면상의 일치이다.

은행은 서류가 일반적인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 서류가 법률상 완전하고 유효한지, 위조 또는 변조가 없는지를 오직 서류의 문면상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⁴⁰⁾

37) *Mercantile Safe Dep. & Trust Co. v. Baltimore County*, 526 A. 2d 591(Md, 1987)

38)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 Merchants Nat'l Bank*, 569 F. 2d 699(1st Cir. 1978)

39) James. E. Byrn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7. 참조

발행신청인은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무역거래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완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행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형식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발행신청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서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지만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과도한 책임이 부여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과도하여 결과적으로는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문면상 심사이외에 무역거래에 관한 각국의 법규 및 관행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고, 제시된 서류의 발행기관이나 발행자에 대한 발행사실을 조사할 만한 시간적·비용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류심사과정에서 형식적인 외형상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문면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UCP 600 제34조에서는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⁴¹⁾, 위조⁴²⁾ 또는 법적인 효력⁴³⁾에 대하여, 또는 그 서류에 기술된 일반 또는 특정조건이나 부기사항에 대하여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모든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실존의 여부에 대하여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는 물품의 송화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모든 당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불능력, 의무이행 또는 신용상태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은 사실조사의 범위까지 미치지 않고 서류의 문면상의 형식적인 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판례에서는 “...은행의 외국지점은 거래의 세부사항을 공식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을 수 없다. 요구받은 그대로 한다면 은행은 안전하고 요

40)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 A., 1989, p. 60.

41) 진정성이란 서류의 내용에 허위기재가 없이 진실한 상태를 기재하고 있어 서류가 있는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위조(변조)란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유효한 것으로 외관을 가장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3) 법적 효력이란 제시된 환어음 및 서류가 각각의 관계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받은 일 이외의 일은 거절해 버리면 또한 안전하나 만약 규정된 조건에서 벗어나면 은행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판시⁴⁴⁾한 바 있고, J. H. Rayner & Co., Ltd. v. Hambro's Bank Ltd. 사건에서는 “...은행은 은행이 취급하는 수천가지 업종에 대해서 각기 그 업종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들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라고 판시⁴⁵⁾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엄격일치 기준 하에서는 지급청구서에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반드시 명백하게 일치하여야 하고, 아무리 경미한 편파에도 발행인의 지급거절이 허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의 지위는 순수한 관료적인 것이고 은행은 단순히 신용장 조건에 비추어 제시된 서류를 검사하는 것이고 시간을 소비하면서 불일치가 중요한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영구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⁴⁶⁾하여 엄격일치의 기준에 의한 신용장 서류의 심사는 현실적인 은행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과 상당일치론

UCP 600 제14조 제a항에서는 1962년 UCP 개정 때부터 도입한 상당한 주의(with 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삭제하였다.⁴⁷⁾

UCP 600에서는 제시(presentation)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UCP 600 제2조에서 ‘제시’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서류를 발행은행이나 지정은행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제시라는 개념에는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되는 서류도 의미하기 때문에 UCP 500 제13조 제a항의 “모든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UCP 600에서는 “제시를 심

44)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Ltd.* (1927) 27 Ll. L. R. 49, 52.

45) (1943) 1 K. B. 37.

46) *Mercantile-Safe Deposit & Trust Co. v. Baltimore County*, 309 Nd. 668. 526 A. 2d 591(1987).

47) 서정두, 전제논문, 「무역상무연구」 제33권, p. 104.

사하여야 한다”로 축소하여 제서류의 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의 조건과 UCP 및 ISBP에 일치하는 제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UCP 500 제13조 제a항에서 “문면상 신용장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ascertain)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determine)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의 점점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던 규정을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지를 은행 담당자가 결정하는 규정으로 하여 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UCP 600 동조 제d항에서는 “서류 그 자체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문맥을 읽는 신용장의 데이터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지만, 그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어떤 서류상의 자료가 그 서류상의 자료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상의 자료 또는 신용장상의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들 자료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UCP와 ISBP의 규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UCP 500에서는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⁴⁸⁾고 했었으나,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지만, 그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⁴⁹⁾고 완화하여 서류심사에 있어 수리거절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본 조항의 의미는 서류심사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소 UCP 500의 서류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상당일치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UCP 500 제21조에서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의 발행인과 서류상의 문언 또는 기재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기재내용은 제시된 그 밖의 모든 규정된 서류와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대하여만 제시된 대로 수리하고 그 밖의 서류와 모순(not consistent with)되지 않는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48) UCP 500 제13조 제a항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49) UCP 600 제14조 제d항 “...,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

UCP 600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14조 제d항과 제e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문맥을 읽는 신용장의 데이터…” 혹은 “상업송장이 아닌 서류들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신용장 조건과 이에 명시된 여타의 서류에서도 내용이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지 않도록 일치성 적용을 완화시켰다.

UCP 600의 제14조 제e항에서 상업송장을 제외한 나머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업송장 만이 수익자가 직접 작성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작성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익자의 경우에는 직접 신용장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이해 관계자들은 해당 무역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될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오식에 대하여 급하게 대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상당일치론의 한계

신용장 서류심사의 엄격일치의 기준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의 법원과 UCP, 이론들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고수되어 다수설인 것으로 보이고, 상당일치의 기준은 은행의 입장을 위시한 엄격일치 심사기준을 경계하는 기준으로 소수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뉴욕주 항소법원은 “은행은 고객의 수권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향유하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만약 은행이 그러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그 때는 은행이 자신을 위험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시된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가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므로, ‘Alicante Bouchez Grapes’의 선적을 요구한 선적된 물품의 명세를 단순히 ‘Grapes’라고 약식 기재된 선화증권은 정당하다.”라고 판시⁵⁰⁾하여 신용장의 조건에 대한 매매계약의 종속관계에 있는 관계당사자(운송인)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발행은행은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테네시주 항소법원은 “실제로 선적된 물품은 물론

50)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1924) 239 N.Y. 234

'Dailer ME-310'중의 어디에도 신용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Dailer'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발행은행의 지급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판시⁵¹⁾하여 추가적인 물품명의 기재를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보지 않고 있다.

엄격일치의 기준은 신용상의 상업적 효용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미국의 판례들의 주류는 엄격일치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들이지만, 경우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위 원칙이 악용되어 거래의 공평한 해결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고, 이에 미국의 일부 법원들은 엄격일치의 기준을 일부 수정 내지 완화하여 신용상조건과 서류가 상당히 일치하면 신용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상당일치의 기준을 일부 사건에서 적용하였는데, 그 근거는 ① 발행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결정은 신의성실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장래에 대한 생각이나 상환청구권의 상실이라는 위험 때문에 발행신청인의 판단을 그의 판단으로 대체하여서는 않된다는 점, ② 발행은행이 단지 기술적으로 불충분한 경우, 예컨대 콤마의 누락이나 위치가 잘못된 경우 등과 같은 사소한 것에도 그것을 이유로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때문이라 한다.⁵²⁾

우리나라의 판례는 항소법원이 선적서류의 오기를 들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을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해당 오기의 내용이 물품의 명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재사항이므로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판시⁵³⁾한 바 있다. 또한 "신용장 발행은행은 발행신청인인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여기에서 상당한 주의라 함은 물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킨

51) *Talbot v. Bank of Handersonville* (1973) Tenn. App. 496 S.W. 2d. 54R.

52) 김선국, "신용장의 엄격일치성과 그 완화수단", 「경영법률」 5집, 1992, p. 456.

53) 채동현, "신용장관련 선적서류의 오기와 서류상 하자 여부", 「Jurist」 통권402호, 청림출판, 2004, pp. 45 ~ 50.

다. 다만,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⁵⁴⁾하여 문면상으로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표면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 언급된 ISBP는 제25조에서 신용장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오자 또는 입력착오는 그 발생한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서류를 불일치한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⁵⁵⁾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상에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⁵⁶⁾하여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가 중대할 경우에는 서류의 불일치라고 보고 단순한 실수인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4)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55) “...a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 as ‘mashine’ instead of ‘machine’, ‘fountan pen’ instead of ‘fountain pen’ or ‘modle’ instead of ‘model’ would not make the document discrepant. However, a description as ‘model 123’ instead of ‘model 321’ would not be regarded as a typing error and would constitute a discrepancy.”

56)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다7770 판결

IV.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장 거래의 심사기준은 엄격일치론을 기본으로 하여 상당일치론을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일치론에 입각한 판례가 출현한다고 하여서 신용장 심사기준이 엄격일치에서 전이하는 것은 성급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된다.

UCP 600 제14조에서도 역시 엄격일치, 즉 신용장 서류의 문면상 일치성을 기준으로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들은 신용장 조건과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거나 제34조의 사실조사의 범위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서류의 문면상의 형식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업송장만이 수익자가 직접 작성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의 경우에는 직접 신용장 조건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이해 관계자들은 해당 무역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될 수밖에 없으므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오식에 대하여 급하게 대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은행의 현실적인 업무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용장 서류심사의 상당일치의 기준은 물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즉,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 상당일치의 기준으로 생각된다.

만일, 상당일치의 기준으로만 신용장 서류를 지정은행이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판단한 서류를 발행은행(또는 확인은행)에게 송부하는 중 분실하였다면, UCP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행은행(또는 확인은행)은 상환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당일치의 기준으로만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은 원칙이 될 수는 없고 단지 은행관계자의 보다 면밀한 심사를 요구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2002년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 서류심사 사례의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2005.
- 김선국, "신용장의 엄격일치성과 그 완화수단", 「경영법률」 5집, 1992.
- 박석재,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6.
- 박재운, "신용장과 서류와의 합치여부", 「민사판례연구」 8권, 1986.
-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 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제11권, 1998.
-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2007.
- 양영환·서정두, 「국제무역법규」, 삼영사, 2003.
- 오원석, 「최신 무역상무론」, 법문사, 2005.
- 서정두, 「신용장론」, 법문사, 2002.
- ,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5.
- 이대진,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상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시환, "대한상공회의소 발간 'UCP 600 공식 번역 및 해설서'상의 문제점과 그 보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8권, 2008.
- 채동헌,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하에서 운송서류에 대한 심사", 「국제거래법연구」, 2008.
- , "신용장관련 선적서류의 오기와 서류상 하자 여부", 「Jurist」 통권402호, 청림출판, 2004.
- Anonymous, "Opinions from the Moscow Banking Commission meeting", *DCINSIGHT*, Vol.11, No.1, 2005.
- Becker Joseph D.,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The Irania Cases: Will the independence of credit survive?", 13 UCCLJ, 1981.
- Byrne James E., *UCP 500 Explored: The Standard of Care in*

- Documentary Examination—Standard Banking Practice*, 7 Letter of Credit Update 6, 1991.
- ,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7.
- Carolyn Hotchkiss,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3, 1991.
- D'Arcy L., C. Murray and B. Cleave,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0.
- Dolan John F., "Why Are So Many Documents Discrepant?", *Documentary Credit Insight*, 2002.
- , *The Law of Letter of Credit(rev. ed. 2003) and 2005 Suppliment No. 1*, A.S. Pratt & Sons, 2005.
- , "Letter of Credit Dispute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 The issuer's and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 *Banking Law Journal* Vol. 150, No. 5., 1988.
- Gao Xing, *The Fraud Rules in the Law of Letter of Credi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 George N. D., "Loss of Documents and UCP 600 article 35", *DCInsight* Vol. 13 No. 4, 2007.
- T. O. Lee, "The UCP 500 Transport Articles need to be revised", *DCINSIGHT*, Vol.9, No.4, 2003.
- King Richard, *Gutteridge and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8th ed., Europa pub., 2001.
- Kouladis Nicholas, *Principle of Law Relating to Overseas Trade*, Blackwell, 1998.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 A., 1989.
- 小峯登, 「1974年信用狀統一規則(上)(逐條解説とその問題點)」, 外國為替貿易研究會, 1980.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Substantial Compliance under UCP 600

Kang, Ho Kyung · Lim, Mok Sam

L/C transac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is the theory of documentary transaction and the theory of strict compliance which are the principles of L/C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leading cases in England and America where the practice of L/C transactions was created and developed, the descriptions of the commodities specified on all the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based on an L/C, should be identical to the descriptions of commodities specified in the L/C. And further, many leading cases of L/C continuously repeat to emphasiz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recent leading cases in and out of the country show that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is being weakened. The leading cases in America show two trends of weakening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That is, on the contrary to strict compliance, tends to apply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puts more value on the substance of the documents). These leading cases reflect the attitudes of the judicial and the legislative authorization that don't want to approve formal approach to the commercial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giving a decision on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The documents attached to an L/C should strict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in the L/C, but it doesn't mean that they should be perfectly identical without any mistake in words. In case the bank can understand through reasonable care that a small mistake in words is too trivial to give different meaning or to give damage to the conditions of the L/C, the documents are regarded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 L/C. However, the judgment should be based on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cuments and the L/C can be admitt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 transaction practice or not.” This decision tells that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is quite much modified so application of this modification can't be ignored.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he party who requests to open an L/C, there is a criticism that a bank's arbitrary judgement can be involved.

Therefore, reviewing the original purpose of L/C transactions (activat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may be thought old-fashioned because it emphasizes a form, but in reality, for prompt transaction and payment,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should be observed in L/C transactions. And further, if a legislative device is prepared to systematically compensate for several side-effects,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will improve dynamic flow of prompt and low-costly L/C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able to protect the interested parties.

Key Words : Letter of Credit(L/C), Strict compliance, Substantial compliance